시 보

선 람	기관의 장

all ways INCHEON

제1995호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21년 12월 24일 금요일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-542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····· 2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-317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····· 3
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-3179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····· 4

입법예고

○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-163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8

회 람								

인천광역시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고 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1-542호

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(경미한 변경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4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사 업 명

- 계양구 갈현2 지적재조사지구

2. 사업시행자: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

3. 변 경 내 역

- 계양구 변경 현황

지구명	변경 전		변경 후		비 고
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
갈현2	105	129,119	105	125,517	면 적: 감3,602㎡

4. 토지조서

-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(전화032-440-4552~4, 팩스032-440-8682)

- 계양구 토지정보과(전화032-450-5103~6, 팩스032-551-5732)

공 고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1-3175호

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3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등록번호	상호 및 대표자	영 업 소 재 지
320439	주식회사 연홍개발 대표 서정훈	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38, 트루엘에디션 401호(중산동)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1-3179호

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「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을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4일

인천광역시장

1. 공고명 :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2. 예고 내용

가. 인천광역시 문화재 등록

1) 대상문화재

번호	명칭	구조	수량/면적/규모	시기	소유자 및 소재지
1	구 미쓰이(三井)물산 인천지점(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)	목조,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면적 184.21㎡ (지상2층)	1954년	**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**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
2	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	토기 목조	건축면적 232.92㎡ (2동, 1층)	1901년 (안채) 1881년 (바깥채)	**전영근**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05

2) 등록 예고 사유

○ 구 미쓰이(三井)물산 인천지점(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)

- 한국문학관 기획전시실은 1930년대 마쓰이 물산의 업무시설로 세워진 건축물로 ‘조적조+목조트러스’라는 초기 근대건축 구조와 코린트 기둥과 아치형 창호와 같은 고전건축의 의장을 표현하면서도 층의 구분없이 강조된 수직선과 같이 모더니즘 국제주의건축의 의장수법이 나타나고 있어 근대건축의 과도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
  또한, 상사 건축의 구성요소로 중요한 물류창고가 부속채로 남아 있다는 점 역시 일반 업무시설과 다른 상사 건축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음
  이상의 두 가지 특징과 보존상황은 인천 근대건축의 시기구분에 있어 과도

기로 평가되는 1930년대 건축의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음

○ **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**

-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상량묵서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, 건축의 공간구성과 세부 의장 역시 기록과 일치하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
  목재의 치목수법과 가구법, 창호 등 세부적인 모습에서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, 강화도의 주택 중 드물게 조선시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. 강화도의 주거 관련 문화재가 일제강점기 근대한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, 이 집은 조선시대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사에 있어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

3. 등록 예고일 : 시보 공고일

4. 등록예고 기간 : 시보 공고일로 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
ㅇ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,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 담당 주무관 이메일(mentalage7@korea.kr)로 제출

다. 연 락 처

ㅇ 전 화 : (032)440-4032

ㅇ 팩 스 : (032)440-8693

ㅇ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, 인천광역시청 신관9층 문화유산과

<붙임> 등록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

<등록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>

□ 구 미쓰이(三井)물산 인천지점(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)



□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



<안채>



<바깥채>

입법예고

입법예고문

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-163호

「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4일

인천광역시장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(배치형태, 직무범위 등) 신설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(참조: 정책기획관,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본관 304호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(전화번호 032-440-2156, 팩스번호 032-440-8628, 전자메일 chachoi3@korea.kr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

※ 이 조례(규칙)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(홈페이지 주소: https://www.incheon.go.kr/legal/)

4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외, 붙임 참조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 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 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조례 제정・개폐, 예산・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・조사・분석 지원 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・분석 지원 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.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・분석 지원 5. 의원의 공청회・세미나・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

	지원 및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제5조·제6조 (생 략)	제6조·제7조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

붙임 2

<관계법령>

□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22. 1. 13] [2021. 1. 12, 전부개정]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[시행 2022. 1. 13.] [2021. 12. 16., 전부개정]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22. 1. 13.] [2021. 12. 16., 일부개정]
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・도의 경우: 6급 이하

2. 시・군・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붙임 3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.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